

#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26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1호

라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29 상정의결)

#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산되어 있는 『지역특산물』 관리부서를 생산에서 판로개척,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고
- 산업과 소관의 “농업 기술지도” 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폐 지 : 지역경제과 유통협력담당
- 통 합 : 산업과 경제작물담당 + 지역경제과 유통협력담당  
⇒ 산업과 유통협력담당
- 업무이관 : 지역경제과의 “지역상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”을 산업과로 이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 중 기능 쇠퇴, 유사·중복 기구 등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
-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산된 “지역특산물” 관리부서를 생산에서 판로개척,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산업과로 통합하고 또한 산업과 소관의 농업기술 지도 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의 (오임수 위원)
  - 조례 개정 이전 10. 16일자로 인사발령을 한 이유는?
- 답 변 (자치행정과장)
  - 1차 구조조정 시 유통협력담당을 지역경제과에 신설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생산부서의 이원화로 효과적인 지원이 안 되고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문제가 있어 조례개정 이전 10. 16일자 겸직 발령하게 되었음.

### 5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지역특산물의 관리 업무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는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전체 위원 의 의견임.

#### 나. 반대토론

- “없 음”

## 6. 수정안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 음”
- 나. 수정이유 : “없 음”
- 다. 수정골자 : 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지역특산물의 관리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려는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조례 개정 이후 인사를 하지 않고 조례개정 이전인 지난 10. 16일자로 경제작물담당과 유통협력담당을 겸직 발령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“없 음”

#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 일 : 1999. 10. 26

○ 제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2호

라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29 상정의결)

#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 조정의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,
- 그 동안 지방행정조직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·미비점 보완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개정한 『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』 (대통령령16,550호,'99.9.9)이 공포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조정하며,
- 사회복지전문요인을 일반적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 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,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정
  - 사회복지전문요원 (별정직) ⇒ 사회복지직 (일반직)
  - 정원 1명 증원

-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중 “2000년 7월 31일”을 “2000년 6월 30일”로, “2001년 7월 31일”을 “2001년 6월 30일”로 각각 변경
-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중 직급별 정원을 매년 “7월 31일” 까지를 “6월 30일” 까지로 변경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단계 구조조정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, 그 동안 지방행정 조직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
-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화 지침에 의하여 현재 재직중인 14명을 금년도 연말까지 일반직화 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,
- 정원 승인된 13명에 비해 현원은 14명으로 1명의 과원에 대한 조치와 승인된 직급별 조정은 명확한 기준원칙을 세워 직급별 정원에 부합되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의 (전현옥 위원)
  -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승인은 13명으로 현원보다 1명이 적고 직급도 현 직급과 상이하므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문제점은 없는지?
- 답 변 (자치행정과장)
  - 현재 직급에서 승인된 직급으로의 전직은 승인된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으로 이는 전국적인 문제로서 상부기관의 지침이나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참고하여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음.
- 질 의(정순우 위원)
  - 정원승인은 13명에 비해 현원은 14명으로 1명의 과원에 대한 조치계획은?

○ 답 변(자치행정과장)

- 사회복지전문요원 중에서 타 시군으로 전보 희망자를 파악하여 전출시킨다면 과원 1명은 해소 될 것임.

## 5. 토론요지

### 가. 찬성토론

-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소외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은 매우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임.

### 나. 반대토론

- “없 음”

## 6. 수정안 요지

###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 음”

### 나. 수정이유 : “없 음”

### 다. 수정골자 : “없 음”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반직화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시 일부직원을 현재의 직급보다도 강등시켜 임명하여야 하므로 인사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인사원칙을 정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19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3호

라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29 상정의결)

#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 폐지
-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제8조 제1항 제3호의 퇴학, 정학,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지 사유에 중복이 되며
-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함과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모호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항목임.

나. 주요골자

- 장학금 지급의 정지사유 중 일부삭제 (안 제8조 제1항)
  -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
  -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현행 조례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의 (손판준 위원)
  -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몇 명이며 얼마를 지급 하였으며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?
- 답 변 (자치행정과장)
  - 장학금은 이장 정수인 15%인 39명까지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장의 고령화로 '97년도에는 21명, '98년도 25명으로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, '99년도에는 12,459천원을 지급하였고 특별회계설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음.
- 질 의(조성제 간사)
  - 중학교 학생에게도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?
- 답 변(자치행정과장)
  - 중학생에게는 육성회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- 질 의(이문행 위원)
  - 이장 재직기간 2년 이상 자녀에게만 지급되는데 재직기간 1년이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는지?
- 답 변(자치행정과장)
  - 조례에 위반해 가면서 지급하는 사례는 없음.

### 5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내용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현실성에 맞게 개정

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음.

나. 반대토론

○ “없 음”

## 6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음”

나. 수정이유 : “없음”

다. 수정골자 : “없음”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조례 내용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.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중학교 학생의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 
(조성제 간사)

# 〔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〕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19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4호

다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30 상정의결)

#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수입증지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,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“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”를 “수입증지판매계약제”로 완화  
- “판매인 지정 시 직장금고 타우선 ”조항 삭제
- “수입증지판매인 지정신청” 조항 삭제 (안 제9조)  
-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인감계 등 첨부 서류 제출 조항 삭제
- “수입증지판매인 변경 및 해지”시 “10일전”까지 신청하던 조항을 “2일전으로 완화(안 제11조)
- “수입증지판매소 위치” “판매인 승계” “변상책임”조항 삭제 (안 제12조, 제14조, 제17조)
- “수입증지판매수입금 관리”조항 삭제(안 제21조)

### 3. 검토의견

- 거창군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('99. 1. 29) 및 경남도 수입증지 조례('99. 8. 4)의 일부 개정으로,
- 본 조례 제7조 “판매인 지정”을 “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한 제9조, 제12조, 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는 삭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고,
- 또한 제12조(판매소의 위치) 증지판매소는 “민원실내에 설치되어야 한다”는 삭제되어 민원인들에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 제7조 3항 직원공제회 또는 직원상조회 등 직원 후생 복지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이용에는 조금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문 (강신봉 의원)
  - 증지판매인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부적격자란 어떤 내용인지?  
또한 민원담당공무원 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는 종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?
- 답 변 (재무과장)
  - 부적격자는 판매장소의 무단변경, 판매인의 사망, 행방불명, 그리고 무능력하게 된 자가 해당됩니다.
  - 제7조에서 군수도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 내 판매공무원을 지정해서 판매토록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.

## 5. 토론요지

### 가. 찬성토론

- 거창군 수입증지 발행과 운영,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
-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('99. 1. 29) 및 경남도수입증지 조례('99. 8. 4)의 일부 개정으로, 본 조례개정은 안은 내용중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체 의원의 의견임.

#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.

## 6. 수정안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음”
- 나. 수정이유 : “없음”
- 다. 수정골자 : “없음”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상위법인 일부 개정으로, 본 조례개정은 안은 내용 중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구수정할 부분이 없어 본 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 8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19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5호

라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30 상정의결)

### 2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폐지이유

○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후 적시입법이 지연되어 적법성 논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으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일제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, 산업단지관리지침,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어

○ 별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『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관한조례』를 폐지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는 1989. 5. 27일 조례 제105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### 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음
- 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 6. 수정안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음”
- 나. 수정이유 : “없음”
- 다. 수정골자 : “없음”

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본 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지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19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6호

다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30 상정의결)

### 2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폐지이유

-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
-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가 '98. 3. 12 조례 제2555호로 제정되어 군에 권한을 위임 하였으므로
- 현행 군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현행 거창군농지개량조합 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폐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조례는 1972. 1. 25일 조례 제 184호로 제정되어 1982. 6. 29일 조례 제641호로 전면개정 된 후

1985. 7. 24일과 1990. 9. 29일 2차례의 개정 하였고

- 정부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면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에 규정하여
- '98. 3. 12일 경상남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에 제정공포 되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문 (이문행 의원)
  - 경상남도에서는 '98. 3. 12 조례를 제정공포 하였는데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?
- 답 변 (건설과장)
  - 제정된 상위조례가 있어 농지개량계 관리운영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늦어졌습니다.
  -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.

#### 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음
- 나. 반대토론 : 없음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"없음"
- 나. 수정이유 : "없음"
- 다. 수정골자 : "없음"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정부에서 농촌근대화촉진법을 폐지하면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'98. 3. 12일 경상남도농지개량계 관리조례에 제정공포 되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폐지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〔 거창군 건축조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23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라. 의안번호 : 제99 - 57호

다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29 상정의결)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건축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
-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조례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.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 축소와 도시계획 예정지 내 가설건축물 건축허용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
-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폐지와 군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규정된 각종 내용 중 중복되거나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
- 군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의 (전현옥 위원)
  - 건축사 현장조사,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지정을 거창군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사로 규제를 하였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?
- 답 변 (도시환경과장)
  -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 지역특성과 개성 정서를 감안하여 충분히 심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질 의 (이문행 위원)
  - 관내 건축사가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?
- 답 변 (도시환경과장)
  - 관내 건축사는 6명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.
- 질 의 (위원장)
  -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보다도 규정이 강화된 것이 많습니다. 제18조 가설건축물 층수는 상위법은 3층인데 2층 이하로 규정하였고 용적률과 대지분할의 제한 역시 시행령 보다는 비율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?
- 답 변 (도시환경과장)
  - 우리 군의 경우 가설건축물은 3층이 없습니다. 또한 3층으로 했을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2층 이하로 제한

하였으며 상위법 보다는 규정을 강화해 놓았다고 하지만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으며

- 우리 군의 경우 현행 조례로서도 민원이 발생된 경우는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의 비율을 가지고도 농촌지역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.

## 5. 토론요지

### 가. 찬성토론

-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 중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.

### 나. 반대토론

- “없 음”

## 6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음”

나. 수정이유 : “없음”

다. 수정골자 : “없음”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 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이문행 위원

- 건축사의 공사감리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인 규칙 등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 〔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결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 : 1999. 10. 26
- 제출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8호

라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29 상정의결)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정이유

-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위임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생태적·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행정기관, 주민,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 및 자연경관의 보전 기본 원칙을 정함
- 자연경관 보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에 관한 사항
- 자연경관의 적정관리방법, 보전활동 및 지원
-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·운영 및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
## 3. 검토의견

-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상위법 위임근거에 의해 제정되기 이전에,

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일간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는 등,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

-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석산개발 등으로 자연훼손에 행정의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위임근거 및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체계, 내용, 자구상 문제가 없음이 검토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의 (오임수 위원)
  - 입법예고는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의견접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연경관보존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?
- 답 변 (도시환경과장)
  - 입법예고 후 주민들의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자연경관보존지역 지정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역 지정 시는 그 방면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얻고 또한 심의위원회 선정 시 그러한 분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.
- 질 의 (임영선 위원)
  - 자연경관보존지역 지정 시 개발사업 규제로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한 사업자의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?
- 답 변 (도시환경과장)
  - 보존지역 지정 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, 개발과 보존지역 지정 시는 충분한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으며 벌칙조항 규정문제는 내용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.

#### 5. 토론요지

##### 가. 찬성토론

-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석산개발 등으로 자연훼손에 행정의

앞장서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으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본 조례제정은 안은 우리 군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전체 위원 의견임.

나. 반대토론

○ “없음.”

## 6. 수정안 요지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음”

나. 수정이유 : “없음”

다. 수정골자 : “없음”

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본 조례제정은 안은 우리 군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전체 위원 의견이며 상위법 등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 수정할 부분이 없어 본 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 8. 소수의견 요지

○ 오임수 위원

- 주민들과 관계가 있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시 주민들에게 입법 예고할 때에는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, 읍·면 게시판에 홍보하는 형식적인 방법 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조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
○ 정순우 위원

- 자연경관보존지역 지정 시에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.

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입법예고 시 군, 읍·면의 게시판에 게재하였다고 했는데 공고문을 서면으로 제출요구(조성제 위원)

#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 출 일 : 1999. 10. 19

○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9. 10. 28

다. 의안번호 : 제99 - 59호

다. 상정일자 : 제63회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 
(1999. 10. 30 상정의결)

#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○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수  
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 (안 제6조제2항)

- 전염병예방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에 대해 실비 수준  
의 접종약품 대금 징수 근거 신설

○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

-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)

- 시험결과의 광고금지등 (안 제10조)

- 성적원본의 말소 (안 제11조)

-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(안 제13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 
수수료의 징수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 
본 조례는 1965. 12. 8(조례 제20호) 제정, 공포된 후 그 동안 12차  
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중,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수가에 관한 사항 제6조 2항을 신설하고,
- 또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제8조 3~4항과 제10조, 제11조, 제12조를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됨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 문 (최용환 의원)
  - 임시예방접종 약품대를 징수한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입니까? 또한 임시예방접종을 위하여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?
- 답 변 (보건소장)
  - 임시예방접종은 금액이 너무 과다해 예산이 부족하므로 실비의 접종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으며 '99년의 경우 임시예방 접종 비용으로 96,49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.

#### 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“없음”
- 나. 반대토론 : “없음”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“없음”
- 나. 수정이유 : “없음”
- 다. 수정골자 : “없음”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 수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 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.

#### 8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#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